Editor 박영호 미래에셋대우 I&P 리서치팀 이사

강태풍 씨는 초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과 ETF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. 다행히 주식시장 강세 덕 분에 단기간 꽤 쏠쏠한 재미를 봤다. 하지만 몇 년 후에는 국 내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도 과세를 한다고 하니. 이참에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워보려고 생각 중이 다 때마침 2021년부터 ISA에서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가능 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실행해보려고 한다.

원래 가지고 있던 ISA에서 바로 주식 투자가 가능한가요?

강태풍 씨가 기존에 ISA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다. 국내주식 투자 는 2021년 새로 생기는 투자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하기 때 문이다. 기존의 ISA 유형은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돼 있 다.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운용에 대한 지시를 내려 야 한다. 상품 편입 및 교체 시 투자자의 지시가 필수이며. 포트폴리오 투자안을 금융회사로부터

제시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.

반면 일임형은 운용을 일임업자에게 위 임하는 형태다 따라서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 지시 없이 가입하고, 투자성향에 맞 게 제안된 포트폴리오 투자안에 따라 운 용하게 된다.

신탁형, 일임형 등 기존의 ISA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ETF와 리츠를 포함한 펀드·ELS/DLS·ELB/DLB 등 파생 결합증권, 예적금 등이다. 국내주식 직접투자는 신설된 '투 자중개형' ISA에서만 가능한 것이다. 투자중개형 ISA는 투 자중개업자(증권사 등)의 일반적인 위탁계좌와 동일한 형태 로서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금융상품 직접 운용을 쉽게 실 행할 수 있다.

ISA는 전체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1개 유형 1개 계좌 로만 가입할 수 있다.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우선 신탁 형이든 일임형이든 기존 보유 계좌를 해지한 후, 투자중개형 ISA에 새로 가입해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. 단 회사마다 투 자중개형 ISA 도입 여부 및 가입 가능 시기가 다르므로 별도 의 확인이 필요하다

주식 직접투자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

이를 따져보기에 앞서 ISA에서 상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 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부터 알아보자. ISA는 일부 수

ISA 계자 유형

	신탁형 ISA	일임형 ISA	투자중개형 ISA(신설 예정)
주요 특징	투자자의 상품 운용지시 필수(포트폴리오 투자안 제시 불가)	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편입/교체 등 운용을 위임	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,투자자가 직접 상품 운용
장점	예금자보호 대상 예금 편입 가능	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	주식매매 등 포함 수월한 직접 운용 가능

자료: 금융투자협회(ISA 다모아



익금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. 구체 적으로는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계좌 내 상품 간 기간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데, 이중 일반 가입자는 200만원, 서민형·농어민 가입자는 400만원을 비과세한다. 이후 남은 순소득은 9.9%의 세율 로 분리과세 한다.

국내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. 이익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에 합산하지 않는 다. 이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 과하지 않기 때문이다.

그렇다면 국내주식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

떻게 처리할까? 이때는 해당 손실을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에 합산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살 펴보자, 만약 IS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만원 의 손실이 나고,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400만원의 이 익을 봤다면, 이를 통산한 최종 순소득은 200만원이 된다. 일반 ISA는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 우 결국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.

한편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가 도 입될 전망이다. 이때 수익금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고율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 현재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은 ISA가 유일한 만큼, 미리 가입해서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. M

해외 지수 ETF 투자는 ISA가 제격

ETF는 펀드를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다. 최근 테마형 ETF와 같이 특정 섹 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

ISA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. 따라서 해외 주가지수를 추 종하는 ETF를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IS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. 현재 국내 시장에도 미국 S&P500이 나 나스닥100, 중국 CSI300 등 주요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해외 테마형 ETF가 비교적 다양하게 상장돼 있으므로, 투자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다. 다만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자.

ISA에서 ETF 투자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 의해야 한다. 금융투자협회 'ISA 다모아'에서 확인해보면 현재 증권사 7곳, 은행 3곳, 생명보험사 1곳의 ISA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다

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익에 대해 15.4%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. 그러나 ISA에서 투자하 면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(서민형은 400만원) 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.9%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. 세율 자체도 훨씬 낮지만, 금 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.